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34 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한병도·김종민·장철민

김영진 · 임오경 · 김영배

민병덕 • 이해식 • 안도걸

정일영 · 서미화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·귀촌 지원 종합계획을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는 시·도 귀농어·귀촌 지원계획 및 시·군·구 귀농어·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·금리상의 우대조치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·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.

이에 귀농어・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

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·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, 귀농어·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· 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·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도 귀 농어·귀촌 지원계획 및 시·군·구 귀농어·귀촌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(안 제6조의2 신설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·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·귀 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·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함(안 제14조제2항 신설).
- 다. 농어촌 지역 중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도 창업,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에서 세제상·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귀농어 •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 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1.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
- 2. 제6조에 따라 시・도계획 또는 시・군・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·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·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·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 제16조제1항 중 "특수상황지역"을 "특수상황지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이나 시·도계획 및 시· 군·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6조의2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
		등의 의견청취) ① 농림축산식
		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,
		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
		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	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
		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
		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그
		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
		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		1.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
		립하는 경우
		2. 제6조에 따라 시·도계획 또
		는 시・군・구계획을 수립하
		는 경우
		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
		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
		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	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4조(박람회 등의	개최) (생	제14조(박람회 등의 개최) ① (현
략)		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
		<u>농어·귀촌 활성화를 위하여</u>

제16조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,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・금리상의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	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
	에게 귀농어·귀촌 체험의 기
	회를 제공할 수 있다.
제	16조(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
	에 대한 우대지원) ①
	특수상황지역 또는 같
	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
	<u>지역</u>
	② (현행과 같음)